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37
----------	-------

발의연월일 : 2025. 9. 9.

발 의 자 : 강경숙 · 이해민 · 김준형
황운하 · 정춘생 · 박은정
김재원 · 차규근 · 백선희
신장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통령이 지명 또는 국회, 교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의 비중이 과도한 측면이 있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정책에 관한 주요 논의들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5조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5명”을 “4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2명”을 “3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를 “1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작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속기방법으로 작성”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2.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3. 제4항에 따른 회의 참석자의 성명
4. 상정안건,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5. 표결 수

6. 위원장의 보고

7.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를 방청하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 위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 ----- ----- ----- ----- -----.
이 경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대통령이 지명하는 <u>5명</u>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2. ----- <u>4명</u> ----- -----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u>2명</u>	5. ----- ----- <u>3명</u>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다.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① ----- ----- ----- ----- -----.

1. (생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생략)

② ~ ⑥ (생략)

제15조(회의)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③·④ (생략)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 (현행과 같음)

2. 1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속기방법으로 작성-----.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2.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3. 제4항에 따른 회의 참석자의 성명

4. 상정안건,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u><신 설></u>	<u>5. 표결 수</u>
<u><신 설></u>	<u>6. 위원장의 보고</u>
<u><신 설></u>	<u>7.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u> <u>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신 설></u>	<u>⑥ 위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u> <u>를 방청하려면 위원장의 허가</u> <u>를 받아야 한다.</u>
<u><신 설></u>	<u>⑦ 위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하</u> <u>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u> <u>장을 명할 수 있다.</u>
<u>⑥ (생 략)</u>	<u>⑧ (현행 제6항과 같음)</u>